

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견

의안 번호	13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12.1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이미 결정되어진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중 임상이 양호한 녹지지역일부를 제척하여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시설명 : 폐기물처리시설(중간처리시설)
- 위치 : 사하구 다대동 산64번지 일원
- 용도지역 : 자연녹지지역, 일반공업지역
- 면적 : 13,000㎡(감 9,645㎡)
- 신청자 : (주)육성산업 대표이사 이해철

3. 관계법령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 -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관리계획 입안(변경결정)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.

多大洞 山64番地 一圓 都市計劃施設 變更決定案

1. 都市計劃施設 概要

- 시설명 : 폐기물처리시설(중간처리시설)
- 위치 : 사하구 다대동 산64번지 일원
- 용도지역 : 자연녹지지역, 일반공업지역
- 면적 : 13,000㎡(감 9,645㎡)
- 신청자 : (주)육성산업 대표이사 이 해철

2. 決定事由

- 이미 결정되어진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중 임상이 양호한 녹지지역 일부를 제척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.

3. 都市計劃施設 決定調書

구분	도 표시번호	면 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		폐기물 처리시설	중 간 처리시설	사하구 다대동 산64번지 일원	22,645	감)9,645	13,000	'98.05.14	

4. 現 況

- 본 시설은 1998.05.14 부산시고시 제127호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일부는 일반공업지역임.
- 신평·장림지방산업단지와 홍티공영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임야로서 금회 임상이 양호한 녹지지역일부를 제척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청되었음.
- ※ 2001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임상이 양호한 녹지지역 일부가 포함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이 부적정하므로 제척.